

## 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1. 10. ~ 1. 18.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○ ] 기타(건축물 해체허가 적정성 검토)		
건축주	주식회사 케○○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		
	지번 : 1032번지	관련지번 : 196-11, 1033	
	대지면적 : 13,755.1㎡	용도지역 : 준공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4,348.65㎡	건폐율 : 31.61%	층수 지하 : / 지상 : 1층
	주용도 :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	구조 :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블럭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호 / 4동
	최고높이 : 8.7m	용적률 : 31.61%	연면적 : 3,648.03㎡

	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6.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기준 미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사기준은 해체계획서 항목(p.)을 표현할 것.(p.56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(국토부) 상 굴착기의 최대작업높이는 건물높이+3.0m 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므로, 건물높이(8.7m)에 따른 굴삭기 최대작업높이(10.7m)를 재검토 할 것(p.75)</li> <li>○ 해체장비(굴삭기 등) 작업진행방향, 운행경로 등 표현할 것(p.75)</li> <li>○ 가시설물 설치 ‘해당없음’ 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인접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(p.10)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산먼지 확산 방지 및 낙하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할 것</li> <li>○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(국토부) 상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현장 조사 결과와 구조도면을 비교·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(p.93)</li> <li>○ 해체계획서에 주변 도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바, 당해 철거 건축물이 4차선 도로와 일정거리 이격되어 있으나 패널 등 철거시 파편 비산에 따른 주변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 검토가 필요해 보임.</li> <li>○ 건축물 해체 시 주변도로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용면적 최소화 및 안전관리 철저</li> <li>○ 구조설계도 확인 및 구조 검토를 통한 보고서 제출 필요</li> <li>○ 해체 진행에 따른 각 부재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</li> <li>○ 폐기물 반·출입 위치와 적재 장소 확인 및 반·출입 동선과 폐기물 차량 배치도 확인 필요.</li> <li>○ 도로 통제 및 신호수 등 구체적인 인근 대응방안 제출 필요</li> <li>○ 해체용 중장비 진행에 따른 지반 내력 검토 보고서 제출 필요</li> <li>○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차(스카이), 굴착기 등 장비가 사업장 내에서 이동시에는 반드시 신호수 또는 안전관리자 등의 추가 장비유도자 배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</li> </ul>

		<p>○ 현장 폐기물차량 진·출입 시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시거불량이 존재하므로 보행자(운전자) 존재 유무를 사전확인 후 차량의 진·출입을 유도하고, 그라스울 판넬 등 폐기물처리 위탁업체 작업자 및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필요함.</p> <p>○ 해체 기간 수정 필요</p>
--	--	--

<p>심의결과</p>	<p>[ ] 원안 의결    [ ○ ]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## 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1. 10. ~ 1. 18.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○ ] 기타(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적정성 검토)		
건축주	울산광역시 북구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		
	지번 : 450-11번지	관련지번 :	
	대지면적 : 152㎡	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90.94㎡	건폐율 : 59.83%	층수 지하 : 층 / 지상 : 3층
	주용도 : 노유자시설	구조 : 철근콘크리트	세대수(호)/동수 : /1동
	최고높이 : 9.8m	용적률 : 147.27%	연면적 : 223.8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공시 천정재(석면포함 여부 확인)의 해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.</li> <li>○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(기술)기준 준수</li> <li>○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상부 확장을 배제하기 위해 배관라인의 연기 확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</li> <li>○ 외장재 화재가 상부층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장재의 불연 재료 검토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</li> </ul>	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

## 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1. 10. ~ 1. 18.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○ ] 기타(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적정성 검토)		
건축주	울산광역시 북구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		
	지번 : 1006-15번지	관련지번 :	
	대지면적 : 259.4㎡	용도지역 : 제1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155.49㎡	건폐율 : 59.94%	층수 지하 : 1층 / 지상 : 3층
	주용도 : 제1·2종근생 단독주택	구조 : 철근콘크리트	세대수(호)/동수 : /1동
	최고높이 : 13m	용적률 : 147.94%	연면적 : 383.7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공시 천정재(석면포함 여부 확인)의 해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.</li> <li>○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(기술)기준 준수</li> <li>○ 그라스울판넬 철거시 가급적 원형 훼손이 없도록 철거하고, 특히 외부 철판과 내부 심재를 현장에서 박리케 하여 그라스울 심재가 비산되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공정이 없도록 할 것.</li> </ul>	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